通商摩擦에 對應한 關稅法의 改正方案

申 有 均*

차 례

Ⅰ. 序 言

Ⅱ. 關稅政策과 關聯한 改正方案
1. 關稅率水準의 引上調整 및 體系改編
2. 調整關稅制度의 再檢討
3. 割當關稅制度의 合目的的 運用
4. 季節關稅制度의 修正
5. 國際協力關稅制度의 修正
6. 包括的 國家安保를 目的으로 한 輸入制限規定의 新設 및 그 運用의 活性化
7. 一般特惠關稅制度(GSP)의 實施準備

Ⅲ. 通關政策과 關聯한 改正方案
1. 輸出入物品 專門檢査官制度의 實施
2. 原産地確認 및 表示制度의 整備

Ⅳ. 産業被害救濟制度와 關聯한 改正方案
1. 緊急關稅制度의 改正方案
2. 反덤핑關稅制度의 改正方案
3. 報復關稅制度의 改正方案

Ⅴ. 結 言

本 研究의 內容은 筆者個人의 學問的 見解를 反映한 것인 바, 政府關係機關의 意見과는 無關함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 關稅廳 書記官, 法學博士

Ⅰ. 序 言

韓國의 市場開放問題는 1982年 우리나라의 最大交易相對國인 美國의 레이건行政府에 의하여 金融·保險·證券市場의 開放(金融의 경우에는 擴大開放)과 知的財産權의 保護 및 一部農産物의 輸入開放問題가 제기된 이래로 美國 및 EC 그리고 최근에는 開途國으로부터도 各種의 工産品, 서비스 및 農林畜水産物에 대한 市場開放 또는 그 擴大開放을 要求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目下 1986年 9月 이래 7年餘에 걸쳐 그 協商이 進行되어 오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UR)의 最終的인 妥結움직임과도 직결되어 있는 狀況인 것이다. 비록 우리나라의 輸入自由化率이 1993年 現在 98.1%에 이르고 있고 1994年에는 98.6%에 達하게 되어 있지만, 主要 交易相對國들은 아직 그들의 『特定的 利益』이 충분히 保障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韓國內의 諸般事情을 度外視한 채 自國의 交易上의 利益貫徹을 위해서 한편으로는 通商壓力을 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韓國産 輸出品에 대하여 反덤핑關稅 및 相計關稅의 賦課, 緊急輸入制限,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所謂 一方的 攻擊手段으로서 美國은 슈퍼301條(현재 美國議會에는 6個의 新슈퍼301條 關聯法案이 提出되어 있는 바, 美國議會와 行政府는 이들을 綜合하여 輸入商品에다 環境關稅的인 槪念까지 加味한 Blue and Green 301條의 立法化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서 현재 EC 및 日本과 마찰을 빚고 있다)의 復活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맞서 EC도 또한 一方的 攻擊手段인 New Commercial Policy(NCP)體制를 定立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主要交易國은 自國의 門은 슬슬 걸어 잠그면서 相對國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理由에서든 市場의 擴大開放을 요구하고 있는 實情에 있는 바, 美國 클린턴行政府가 公正貿易主義의 原則과 『結果指向的 管理貿易政策』(result-oriented managed trade policy)에 基礎하여 마련한 政策報告書인 『國家輸出戰略을 向하여』(1993年 9月 30日)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輸出增大를 美國政府의 最優先政策으로 삼고 이를 達成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예컨대, 日本과는 『美·日間 包括經濟協議』를, 韓國과는 『韓·

美間 經濟協力對話』(DEC)를 1993年 9月부터 각각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結局, 이렇게 볼 때 앞으로도 大小間의 적지 않은 통상마찰이 예견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急變하는 貿易環境속에서 繼起的으로 發生하고 있는 通商摩擦現象에 대하여 效率的으로 對應할 수 있는 方案摸索의 一環으로서 關稅法(및 對外貿易法)의 改正方案을 우리나라의 現住所인 GATT協定 第11條國(韓國은 1990年부터 開途國條項인 同 協定 第18條國으로부터 先進國條項인 第11條國으로 移行한 바 있음)의 位置를 감안하여 關稅政策, 通關政策 및 輸入으로 因한 産業被害救濟制度로 나누어서 要目別로 考察하여 보고자 한다.

Ⅱ. 關稅政策과 關聯한 改正方案

1. 關稅率水準의 引上調整 및 體系改編

(1) 基本關稅率水準의 引上調整

우리나라는 국제수지의 흑자발생시기인 1988년에 제2차 관세인하예시계획(1989~1994년)을 마련하여 연차적으로 관세율을 인하 운용해 오고 있다. 동계획에 따른 연도별 관세인하계획을 보면 아래의 〈表 1〉과 같다.

〈表 1〉

제2차 관세인하예시계획상의 평균관세율 수준

(단위 : %)

구분 \ 연도별	1989	1990~1991	1992	1993	1994
전 체	12.7	11.4	10.1	8.9	7.9
공 산 품	11.2	9.7	8.4	7.1	6.2
농림수산물	20.6	19.9	18.5	17.8	16.6

(자료 : 재무부)

이러한 저관세율수준의 책정은 제2차 관세인하예시계획 작성당시에 그 기본전제로서

①관세의 산업간 중립성을 강조하는 균등관세율체계를 지향하고, 또한

②국제수지의 흑자발생시기(1987년 및 1988년)에 국내외적 산업경쟁의 촉진과 대외통상의 측면을 고려하여 목표관세율(1994년)을 선진국 수준(8%선)으로 인하하겠다는 정책의사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93年末의 時点에서 볼 때 關稅法 第17條에서 規定하고 있는 基本關稅率水準은 우리나라의 經濟發展段階(1992年基準 GNP規模 : 약 2,945億달러, 1人當 GNP : 약 6,755달러)에 비추어 보아 다소 낮은 感이 있고[1], 또한 平均關稅率水準은 OECD所屬 24個 先進國중 一部 先進國(예 :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보다도 오히려 低關稅率水準에 있는 동시에 泰國, 말레이지아, 브라질, 칠레, 터키, 중국, 이스라엘 등 후발개도국의 관세율수준보다도 낮은 것은 물론, 경쟁국가인 멕시코, 타이완 등 보다도 오히려 저관세율수준에 있어 關稅收入確保上의 문제점으로 대두됨은 물론, 효과적인 산업정책의 추진 및 輸入管理制度의 運用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沮害要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此際에 『關稅引下計劃』을 廢止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産業發展段階와 外國의 事例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것이다. 筆者의 見聞으로는 『關稅引下計劃』을 作成·對外公表하여 施行하는 主要國家는 1993年 現在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기본관세율의 體系에 있어서도 『關稅率의 産業間 中立性維持』라는 前提와 일시적 현상이었던 국제수지의 흑자발생을 마치 그 기조적 패턴의 유지인 것처럼 인식한 오류를 修正하여 기조적 국제수지의 적자라는 토대위에서 전반적으로 引上調整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表 2〉에서 주요국가의 관세율수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1) 美國의 1992年度 1人當 GNP : 20,114달러

〈表 2〉

주요국가의 관세율수준 비교 (GATT의 MFN관세율기준)

(1993년도 기준, %)

국별 / 구분	한국		미국	일본	EC	호주	타이완
	1993	1994					
전체	8.9	7.9	7.0	6.5	7.3	20.2	9.2
공산품	7.1	6.2	6.7	5.3	6.4	22.0	7.0
농림수산물	17.8	16.6	8.6	12.1	12.4	5.5	23.3

(자료 : 재무부)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관세율수준이 선진국의 그것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저관세율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바, 특히 섬유류, 의류, 신발류, 가죽제품 등의 경우에는 오히려 선진국보다도 저관세율을 책정하고 있는 바, 이를 아래의 〈表 3〉에서 고찰하여 본다.

〈表 3〉

主要國家의 品目別 基本關稅率水準比較

(단위 : GATT의 MFN관세율기준, %)

국별 / 구분	한국 (1993년)	미국	일본	EC
섬유류 및 의류	10	17 (모방 : 26.5+ 附加從量稅)	14 ~ 16.8 (견직물 : 20)	14
신발류	9	0 ~ 48	27 ~ 36	8 ~ 20
가죽제품	10	0 ~ 5	0 ~ 60	0 ~ 7
반도체	9	無稅	15 (잠정세율 : 無稅)	14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발전의 수준, 임금수준의 상승 등을 고려해 볼 때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 및 신규유망 산업

제품(반도체, 항공기 부분품, 생명공학제품, 첨단통신 산업제품, 신소재 등)의 경우에는 경쟁상대국보다 관세율수준상 불리하지 않은 여건을 조성하여 관세의 산업정책적 기능을 提高시켜야만 한다. 이를 보다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UR이 타결되더라도 GATT에 非讓許한 品目은 UR 關稅協商의 基準時点인 1986年 9月末 현재의 品目別 關稅率水準으로까지 引上調整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UR양허품목의 基本關稅率水準은 1986年 9月末 현재의 關稅率에 기초하여 체차적으로 關稅協商의 引下公式에 따라 인하시켜야만 한다.

②노동집약적 산업물품에 대하여서는 수입관리정책 및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일정수준의 가공도별 세율격차(tariff escalation)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③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산업, 사치성 소비재 및 수입급증 물품에 대하여서는 관세율을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④현행 관세율체계상 나타나는 逆關稅體系現象〔예 : 식품원료(커피, 코코아, 통조림 肉類 등) 對 완제식품에 대한 관세율수준〕은 이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勞動集約的 産業物品 및 農産物에 대한 從量稅制의 採擇

從量稅(specific duty)는 輸入되는 物品의 數量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과되는 關稅이기 때문에 重量, 容積, 枚數 등의 單位當 얼마라는 方式으로 課稅된다. 즉, 從價稅는 高價品에 대해서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데 반해, 從量稅는 低價品에 대해서도 高價品과 동일한 關稅額을 부과함으로써 低價品에 대한 從價換算稅率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게 되고, 그 결과 低價輸入品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從量稅制度 또한 그에 따르는 長·短点이 있게 마련인 바,그러한 長·短点을 고려하여 美國, EC, 캐나다, 日本 등 대다수의 先進國은 從量稅(및 복합관세)를 주로 ①物品의 品種이 같거나, ②과세가격의 파악이 용이하지 않거나, ③국제가격이 빈번히 변동하는 物品 및 ④관세의 산업보호적 기능이 직접적이고 강하게 나타나는 物品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具體的으로는 노동집약적 산업인 섬유류, 의류, 신발류, 완구류 등의 品目과 一

次産業으로서 국제가격의 등락이 심한 農産物을 그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분석하여 볼 때, UR의 결과로 GATT에 양허하여 『國際關稅』化 시키는 우리나라의 농산물품목수가 종전의 全體品目數對比 11%(HS 10단위기준 138개)에서 74%(HS 10단위기준 934개)로 대폭 늘어나게 되고, 讓許稅率도 종전의 95%에서 69%(輸入自由化品目의 경우에는 57%에서 23%로 인하)로 낮아지게 된다. 그 결과 현행 관세율을 통한 農業保護效果는 UR이후 상당히 減少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關稅引下에 대비하고 國內外價格差가 심한 低價農産物의 輸入으로부터 國內農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農産物에 대해서는 현행의 從價稅 대신에 從量稅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競爭力이 沮喪되어 가는 섬유류, 衣類, 玩具類, 신발류 등의 勞動集約的 商品의 경우에도 妥當性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從量稅制의 導入에 있어서는 關稅行政面에서 고려하여야 할 要因이 적지 않다. 즉, 從量稅가 효율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輸入品의 品種, 品質, 加工度 등에 따라 품목분류를 세분화하고 이에 따라 관세율을 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從價稅率에 상응하는 從量稅率을 결정해야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게 되는데 專門家團을 미리미리 양성하여 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시켜 同制度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여야만 한다.

2. 調整關稅制度의 再檢討

우리나라는 단계적으로 수입자유화정책을 채택하면서 과도기적인 제도로서 限時的이고 暫定的인 性格을 가진 조정관세제도를 채택하여 오고 있다. 즉, 1993年末에 改正되어 1994年부터 시행될 改正關稅法 第12條의 2에 規定되어 있는 調整關稅制度는 從前의 同 制度를 改正하여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100分의 100에서 當該物品의 基本稅率을 뺀 率을 基本稅率에 加算한 率의 범위안에서 關稅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農林畜水産物과 이에 관련된 物品의 경우에는 國內外價格差에 相當한 率의 범위안에서 關稅를 부과할 수 있다.

1. 産業構造의 變動 등으로 物品間의 稅率이 현저히 不均衡하여 이를 是正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國民保健·環境保全·消費者保護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國産開發된 物品중 一定期間 保護가 필요한 경우
4. 農林畜水産物 등 國際競爭力이 취약한 物品의 輸入增加로 國內市場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是正 또는 防止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規定하고 있는 것이다.

검토컨대, 100%까지의 調整關稅로 高關稅率을 策定코자 하는 品目이 GATT협정 제2조에 의거하여 한국이 GATT에 양허한 품목인 경우에는 양허한 관세율수준이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되며, 또한 개정관세법 제13조의2제1항제4호는 GATT협정 제19조가 규정하고 있는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와 유사한 개념이며, 동조 제1항 제3호는 GATT협정 제6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反덤핑關稅나 同 協定 제6조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相計關稅에 類似한 개념인 바, 改正關稅法上의 긴급관세(동법 제13조) 및 反덤핑關稅(동법 제11조)에 收容시켜 보다 合規範的으로 보강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하지 않을까 한다.

따라서 GATT 第11條國의 位置에 있는 韓國으로서는 어느 時点에서 發展的으로 그 廢止를 검토하여야 할 制度인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로서 그 폐지시점은 交易相對國이 韓國의 調整關稅制度를 GATT에 提訴하거나, 또는 韓國을 不公正貿易國家로 분류하여 심각한 통상압력을 加하기 直前에 一種의 협상카드로서 본제도의 폐지를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한편, 改正關稅法 同條 同項 第2號에서 規定하고 있는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00%범위내에서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GATT협정 제20조 및 제21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취지는 소망스럽지만 수입규제방법으로서는 實效性이 의심스럽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물품가격의 고저에 관계없이 同 物品의 소비자나 실수요자가 존재하는 限, 關稅率의 引上調整만으로서는 그 輸入을 抑止하기가 힘들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론뿐만이 아니라 韓國의 現實이 이를 웅변적으로 증명하기도 하는 것이다. 오히려 物品에 따라서는 수입억지로 말미암아 소비자의 口味를 더욱 돋울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部類의 價格非彈力的 物品은 관세율 수준의 조정을 통하여서 그 輸入을 抑止시키려

하기 보다는 通關上의 輸入規制 또는 輸入禁止品目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明示規定하여 원천적으로 數量制限(QR)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GATT협정 제20조 및 제21조규정의 國內的 反映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다 效果的인 同時에 GATT協定과의 관계에서도 그 輸入規制의 규범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同條 同項 第3號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산개발된 물품중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규정취지의 소망스러움 與否를 떠나서 規定의 明瞭性과 公正性의 각도에서 問題視될 素地가 있는 동시에, GATT協定과의 관계에서도 문제시 될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GATT양허품목의 경우에는 그 양허세율의 上限까지만 가능하도록 引上調整하고 그것으로도 부족한 경우에는 GATT협정 제19조가 허용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거나, 國産新規開發品目의 種類에 따라서는 GATT협정 第21條가 허용하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例外的 輸入制限措置制度 및 GATT協定上의 기타 例外的 輸入制限措置制度를 活用하는 것이 先進國이 旣開發하여 우리나라에 輸出하여 오던 物品에 대하여 선진국으로부터의 보복조치를 피하여 가면서 合規範的으로 輸入을 抑止하는 方法이 되지 않을까 한다. 다만, 행정기술상의 전문성 확보와 대외협상상의 피곤함, 그리고 시간상의 다소간의 지체여하가 문제될 것이다. 또한 이와는 달리 改正關稅法 同條 同項 第4號의 규정은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 또는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역시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더구나 농림축수산물의 경우에는 조정관세율의 인상범위는 그 上限線을 철폐하여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의 범위안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것은 결국 긴급수입제한조치나 反덤핑關稅 및 相計關稅의 개념에 유사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긴급수입제한조치, 反덤핑關稅 및 相計關稅의 부과와 같은 사후적 산업피해구제제도로서는 그 피해를 충분히 구제하기 힘들다면, 事前的인 피해방지제도로서 GATT협정이 허용하는 제도, 예컨대 수량제한철폐의무에 대한 각종의 예외조치(同 協定 第11條第2項 C, 第12條, 第17條, 第20條, 第21條), 의무면제조치(同 協定 第25條第5項)와 함께 通關上의 기술적인 수단인 原産地證明制度, 品目評價, 物品의 標準과 規格制度, 物品에 대한 각종의 철저한 檢査, 認證制度, 밀수방지노력 등을 보다 效果的으로 충분히

活用하는 등 合規範的인 事前的 輸入制限이나 規制制度를 事後的인 産業被害救濟制度와 併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조정관세를 고세율로 부과하는 것은 GATT양허품목의 경우 對韓國 輸出國과의 통상마찰을 야기할 소지가 많으며, 또한 통상보복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서 前述한 바와 같이 어느 時点에 가서는 긴급수입제한제도나 反덤핑關稅 및 相計關稅制度에 흡수하여 補强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2)]

3. 割當關稅制度의 合目的的 運用

輸入管理制度의 한 수단인 관세법 第16條가 규정하고 있는 割當關稅制度 즉, 특정물품의 수입시에 일정수량까지는 低關稅率을 적용하고 그 이상의 수량에 대해서는 高關稅率을 부과하는 本制度는 그 운용을 合目的的으로 再定立할 필요성이 있다.

同法 第16條는 第1項에서 "물자수급의 원활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基本稅率에서 100分의 40을 減한 率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同條 第2項에서는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分에 대하여 基本稅率에 100分의 40을 加算한 率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의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國內外價格差에 상당한 率을 가산한 率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換言하면, 割當關稅制度는 수입촉진을 위한 『關稅減額割當關稅』와 수입억제를 위한 『關稅增額割當關稅』로 구성되어 있다. 規範的으로 본다면 GATT는 割當關稅制의 채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同協定 第11條第1項), 현실적으로는 GATT 第19條상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일환으로 일정한 수입량을 초과하는 分에 대하여 高關稅率을 限時的으로 적용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허용해 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관세법 第16條第2項이 규정하는 『關稅增額割當關稅』는 後述하는 事後的 輸入管理

2) 1993年 10月 現在 調整關稅를 부과하고 있는 品目은 45個인 바, 그중 23個의 品目이 中國産 品目임.

制度인 산업피해구제문제와 연계시키거나 또는 그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며, 同條 第1項에서 규정하는『關稅減額割當關稅』는 輸入管理 및 歲收確保의 次元에서 그 運用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關稅減額割當關稅』는 同條 第1項第2號 및 第3號에 의거하여 ①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②"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發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의 운용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其實 國內의 輸入業體나 製造業體는 割當關稅制度運用의 本來의 취지를 벗어나 低關稅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多數의 品目에 대하여 관세의 감액을 정부에 요청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를 객관적·중립적으로 검토·분석하여 制度를 合目的的으로 運用하여야만 한다.

할당관세의 운용방향으로서는 대상품목의 數를 대폭 축소하고 운용기간도 단축하여 관세부담의 公平을 기하되, 물가안정과 관세수입의 확보라는 목표가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만 하는 바, ①수입가격의 하락 등으로 할당관세의 적용요건에 부적합한 품목은 제외시켜야 하며, ②反面에 물가의 안정을 위해서는 생활필수품 관련품목중 가격이 급등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최소한도의 범위내에서 關稅減額을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가격이 하락하고 물자의 수급상 애로가 없는 품목 및 할당관세의 적용요건과는 관계없이 특정산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품목에 대하여서는 할당관세의 적용을 排除하여야만 한다.

〈表 4〉

割當關稅의 運用現況 (1993年)

적 용 기 간	대 상 품 목	품 목 수
1992. 7. 1 ~ 1993. 6.30	옥수수, 유채유 등	14 (1)
1993. 1. 1 ~ 1993.12.31	原油, 농약원제 등	6 (1)
1993. 2.20 ~ 1993.12.31	염료, 면사 등	28 (1)
계		48 (3)

※ ( )內는 관세증액할당관세품목임

(資料 : 財務部)

4. 季節關稅制度의 修正

國內物價의 平衡을 위한 關稅制度의 일환으로 改正關稅法 第15條의2의 規定은 從前의 規定을 改正하여 "①價格이 季節에 따라 현저하게 差異가 있는 物品으로서 同種物品·類似物品 또는 代替物品의 輸入으로 國內市場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季節區分에 따라 當該物品의 國內外 價格差에 相當한 率의 범위안에서 基本稅率보다 높게 關稅를 부과하거나 基本稅率에 100分의 40을 減한 率의 범위안에서 關稅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規定하고 있어서 所謂 계절관세로서 『關稅減額季節關稅』와 『關稅增額季節關稅』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계절관세로서 基本稅率에서 100分의 40을 差減하는 경우에는 別問題가 없겠으나 이를 加算하는 경우에는 GATT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즉, GATT 양허품목인 경우 GATT양허세율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특정물품의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에 基本稅率에 100分의 40에 상당하는 率을 加算한 率을 관세로 부과하는 것은 GATT協定上 근거가 없는 것으로 分析되고 있다. 따라서 GATT양허품목의 경우에는 『關稅增額季節關稅』를 GATT양허세율을 그 上限으로 하도록 수정하거나, 韓國의 경제여건상 實效性이 적은 계절관세제도 自體를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5. 國際協力關稅制度의 修正

關稅法上의 『國際協力關稅』 制度中 特定國家와의 雙務的 關稅協商을 통하여 關稅引下를 가능케하는 규정을 廢止하여야만 한다.

1988년에 개정된 관세법에는 소위 『國際協力關稅』의 일종으로 美國 등 선진국의 통상압력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세인하조항(法 第43條의8)이 신규 규정되었다.

동 조항의 규정연원을 보게되면 미국으로부터의 통상압력이 심했던 1985년부터 1987년까지의 기간중 우리나라는 3次에 걸쳐 미국측의 관심품목인 CCCN 8단위기준 666개의 품목(정밀화학제품, 정밀기계류, 농림수산물 등)에 대해 관세를 인하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의 관세법상으로는 일방

적 인하의 법적근거가 모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1988년도에 관세법을 개정하여 雙務的『國際協力關稅條項』을 신설하였는바, 他國의 관세법령에는 특정국가와의 雙務的 관세협상내용을 수용하여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소위『國際協力關稅』규정이 있는 예가 거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국으로부터의 통상압력을 수용하는 方向으로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關稅主權의 확립을 보다 확실히 하고 國內利害關係者들의 意見을 特定國(주로 美國 등)과의 관세협상과정에 보다 충분히 반영시키기 위하여서는 공청회 등을 통한 適法節次(due process of law)의 마련이 事前的으로 필요한 것이며, 또한 1996년에는 OECD에의 加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同 條項을 폐지하여 정상적으로 관세정책을 수립·운용하여야만 할 것이다.

6. 包括的 國家安保를 目的으로 한 輸入制限規定의 新設 및 그 運用의 活性化

GATT協定 第21條 및 國內法에 근거하여 韓國이 國家安全保障(national security)上의 目的을 위하여 수입제한이나 수입규제를 행할 수 있는 品目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아래의 〈表 5〉에서 이를 열거하여 본다.

〈表 5〉

韓國의 安全保障目的과 관련한 법률 및 수입제한대상품목

(품목수 : HS 10단위기준)

GATT 조항	구 분	법률	법 률 명	품목수	비 고
제21조 (b)(i)	핵분열성 물질에 대한 수입제한	1	원자력법	37	
제21조 (b)(ii)	무기, 탄약, 군수품 군수시설 등과 관련한 수입제한	3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 전파법	59 39 9	 GATT TBT 협약 관련

(자료 : 상공자원부)

그런데 國家安保를 이유로 하는 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선진국인 美國의 1962년 통상확대법 제232조를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즉, 同法 第232條는 "國家安保를 沮害하거나 沮害危險이 있는 물품의 수입을 禁止하거나 制限"시킬 수 있는 특별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조항의 발동을 위하여서는 상무부장관은 사전에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무부장관은 당해물품이 "그러한 數量으로 또는 그러한 상황하에서 수입되는 것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조사·판단을 하게되면 그 事實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러한 보고에 기초하여 대통령은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말하자면 엄청난 威力을 發揮할 수 있는 條項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여야 할 것은 대통령과 상무부장관의 고려사항중에는 다양한 要素들이 포함되어 있는 바, 즉, 안보목적과 관련한 국내생산의 필요성여하, 국내생산능력, 안보목적을 위한 자원, 물자 및 서비스동원의 가능성여하, 안보와 관련한 동 수입물품의 수량, 성질 및 활용가능성 이외에 수입물품의 美國産業에 대한 경제적 영향, 미국내의 실업, 歲入減少, 技術 및 投資機會의 喪失 및 同 物品의 과다한 수입에 따른 美國産 物品의 판매위축정도 등등 어떻게 보면 國家安保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순수한 경제적 효과까지를 고려요소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공격적 통상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현재의 빌 클린턴行政府는 국가경제를 국가안보와 同一視하겠다는 정책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1993년초에 백악관내에 國家經濟安保委員會(National Economic Council)를 창설하여 경제적 이익을 국가안보차원에서 지키겠다는 정책의지를 表明하고 있어서 통상확대법 제232조(1974년 Trade Act 제127조 및 1988년 종합무역법 제1501조에 의하여 수정되고 있다)를 발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도 美國은 석유와 석유제품에 대하여 通商擴大法 第232條를 발동시킨 바 있으며, 또한 綜合貿易法上의 工作機械類에 대한 特定的 國家安保條項에 의거하여 antifriction ball bearings에 대하여 輸入規制 目的으로 同 條項을 발동시킨 事例가 있는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1993년 11월 현재 美國은 日本産 반도체 세라믹스 팩키지(Semiconductor Ceramics Package)에 대하여 通商擴大法 第232條와 관련하여 그 輸入規制與否를 검토하고 있어서 日本側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韓國도 對外貿易法이나 關稅法에 美國의 통상확대법 제232조와 유사한 내용을 明文으로 規定할 필요성이 없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예컨대, 美國이 同條項을 발동하는 경우에는 韓國도 유사한 新條項을 發動하여 내면적으로는 경제적 효과에 보다 초점을 맞춘 수입제한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7. 一般特惠關稅制度(GSP)의 實施準備

一般特惠關稅制度(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는 先進國이 開途國에 대하여 相互主義를 요구하지 않고 選擇的·一方的으로 MFN 關稅率보다 낮은 關稅率을 적용함으로써 開途國으로부터의 輸入을 촉진하여 그 輸出所得의 擴大, 工業化의 促進 및 經濟成長에 기여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는 制度이다. 1964年 第1次 UNCTAD總會(뉴델리)에서 채택되어 1971年 6月 GATT가 一括的으로 同 協定 第1條上의 最惠國待遇原則으로부터의 義務履行免除를 承認한 後, 도오꾜 라운드(GATT의 第7次 라운드)에서 1979年 Framework Agreement 決定을 채택함으로써 公式化되었다.

同制度는 1971年以後 EC 및 15個國이 實施하여 오고 있는데 韓國도 1990年부터 GATT協定 第11條國으로 移行하여 왔고, 더구나 1996年頃에는 OECD에 加入할 계획으로 있어서 GSP의 供與를 요구받을 것이 전망됨에 따라 머지않아 關稅法에 이에 관한 根據規定을 明記하여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이럴 경우 同制度의 活用을 통하여 我國의 輸出對象開途國과의 通商摩擦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또한 開途國産 物品을 低率特惠關稅率 또는 無稅로 輸入하여 우리나라의 物價安定에도 기여토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同規定의 運用에 있어서는 先進國의 過去經驗을 충분히 檢討·分析하여 활용토록 하여야만 할 것이다.

Ⅲ. 通關政策과 關聯한 改正方案

1. 輸出入物品 專門檢查官制度의 實施

韓國의 경우 현실적으로 수출입물품검사관의 전문성확보라는 개념이 전

제되어 있지 못한 바, 향후의 수입관리행정을 세관규제적 측면에서 발전적으로 효율화시키기 위하여서는 수출입물품검사공무원의 교역물품에 관한 전문성의 확보가 긴절하다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관세청이 도입·실시하고 있는 수출입물품전문검사관(National Import Specialist)제도를 우리나라에도 전향적으로 도입하여볼 필요가 크다.

GATT와의 約束에 따라 이미 1990年부터 GATT協定 第11條國으로 移行한 韓國으로서는 그 合規範的 輸出入規制를 위하여서는 事前的 輸入規制技術手段인 物品의 檢査, 原産地確認, 迂廻輸入規制, 標準(規格, 品質 등)에의 符合與否, 不正貿易物品의 摘發 등에 그 焦点을 맞추어야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關稅法施行令에 第124條의2를 新設하여 다음과 같이 規定할 필요가 있다.

"①關稅廳長은 法 第14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實效를 거두기 위하여 稅關別로 物品檢査專門 稅關公務員을 指定하여야 한다.

②關稅廳長은 第1項에 의한 物品檢査專門 稅關公務員의 檢査對象物品, 檢査範圍, 檢査方法 등 필요한 基準을 정하여야 한다.

③關稅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物品檢査專門 稅關公務員의 育成 및 敎育方法 등에 관하여 財務部長官과 協議할 수 있다."

2. 原産地確認 및 表示制度의 整備

交易商品의 製造·生産 또는 栽培·加工이 數個國家에서 이루어짐으로써 輸入物品의 原産地를 判定할 必要性은 날로 높아져가고 있다. 改正關稅法은 第243條의 規定을 新設하여 輸入物品의 原産地證明書類를 稅關에서 提出받아 이를 確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同條 第2項은 原産地證明書類不提出의 경우에는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便益關稅의 適用排除와 같은 消極的인 方法으로 對處하고 있는데, 이를 脫避하여서 美國關稅法(Tariff Act)의 規定처럼 보다 積極的으로 通關禁止 내지 留保措置를 明示規定하였어야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關稅主權을 確立하는 한 方法이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實施하고 있는 輸入先多邊化政策을 回避할 目的이거나, 아니면 特惠關稅率制度(TNDC協定, GSTP協定, Bangkok協定 등)의 適用을 노

려 對韓國 迂廻輸出을 하는 行爲를 규제하기 위하여 稅關節次上 原産地確認制度를 강화하여야만 한다.[3)]

또한 이와함께 1991年 7月 1日부터 對外貿易管理規程 第3章 第7節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는 原産地表示制度의 擴大適用이 필요하다. 國內消費者保護次元에서 1993年 現在 原産地管理細則(關稅廳告示)에 의거한 原産地表示對象品目은 3,180個(HS 10單位基準)에 不過한 바, 改正關稅法에 第243條의2의 規定으로 新設된 "輸出入物品에 대한 原産地表示"規定을 實效性있게 집행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輸入物品으로 그 表示義務를 확대하고, 物品의 特性에 따른 적절한 表示方法을 고려하여야 하며[4)], 原産地表示課徵金制度(marking duty)를 新設하여 稅關搬入時에 原産地不表示物品이나 輕徵한 違反物品에 대하여서는 同課徵金을 부과시키고[5)], 原産地를 詐僞 또는 기타의 부정한 方法으로 表示한 物品에 대하여서는 通關을 禁止시켜야만 한다. 그리고 原産地의 通關後 毁損 또는 은폐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되어야만 한다.

한편, 原産地判定基準의 確立이 時急하다. 關稅法施行令과 對外貿易管理規程上의 基準一元化와 品目別 特性에 따른 原産地基準의 適正化 및 HS體系에 기초한 關稅稅番變更基準(CTH)의 補完도 필요하다. 현재 그 妥結을 앞에 두고 있는 UR 原産地規程基本協約과 UR妥結以後 3年以內에 制定될 關稅協力理事會(CCC)에 의한 統一原産地規程의 結果를 지켜보면서 原産地認定 附加價値比率의 適正한 規定(現在 對外貿易管理規程에는 그 適用比率로 35%가 規定되어 있으나, 執行指針이 되는 原産地管理細則에는 이에 대한 基準이 없어서 不明瞭性의 問題가 있음) 및 例外條項을 마련하고, 또한 原産地認定 加工工程의 品目別 指定도 행해져야만 한다.

---

3) 1993年 10月 韓國業體(三星電子, 現代電子 등)들은 日本企業(미쓰미社)이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FDD) 部分品을 필리핀에서 單純組立하여 半製品狀態로 對韓國 輸出하는 것을 規制하여 달라고 政府에 陳情한 바 있다.

4) 美國綜合貿易法은 美國인디언族이 製作하는 것과 동일한 類型의 寶石 또는 準寶石의 對美國 輸出時에는 同物品의 잘 보이는 部分에 原産國을 蝕刻하도록 義務化하고 있다.

5) 美國關稅法에는 10%로 規定하고 있음.

Ⅳ. 産業被害救濟制度와 關聯한 改正方案[6)]

1. 緊急關稅制度의 改正方案

改正關稅法 第13條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관세제도는 국내외의 경제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국내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을 그 취지로 하고 있다.

즉, 긴급관세는 輸入自由化에 따른 外國商品의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해 國內産業이 중대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長時間이 소요되는 정상적인 法的 節次를 피하여 신속히 國內産業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검토하여 보면 多少間의 법률적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즉, 同 第13條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관세의 내용 및 보상조치여부 등은 GATT協定 第19條(特定産品의 輸入에 대한 緊急措置)의 內容과는 相異性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아래의 〈表 6〉에서는 改正關稅法 第13條와 GATT협정 第19條의 內容을 비교하여 본다.

〈表 6〉

改正關稅法 第13條와 GATT協定 第19條와의 比較

	改正관세법 제13조 (긴급관세)	GATT협정 제19조	差 異
발동요건	• 특정물품의 수입증가 •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국내생산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경우	• 特定産品의 輸入增加 • 예기치 못한 사태의 진전, GATT 義務履行에 따른 결과 • 특정산품의 輸入이 同種 또는 直接競爭的 산품을 생산하는	• 1993년 12월 關稅法의 改正을 통해 발동요건이 상당히 일치하고 있음. • 관세법상의『중대한』피해와

6) 相計關稅制度의 改正方案에 대한 考察은 紙面關係上 省略한다.

		국내생산업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경우	GATT협정상의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라는 개념의 차이가 분쟁의 소지가 있음.
구제조치	• 國內外價格差에 상당한 率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함.	• 피해를 豫防하거나 시정할 수 있을 정도의 조치 • 해당되는 의무의 一部 또는 全部를 정지 • 關稅讓許의 撤回 또는 修正	• 현행제도는 關稅만 規制手段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非關稅措置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 현재 餘他國은 GATT協定 第19條에 의거하여 非關稅措置도 취하고 있음.
발동절차 및 기타	• 발동절차는 관세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 被發動國과의 協議에 관한 규정이 없음. • 補償供與措置에 관한 규정이 없음.	• 被發動國과의 協議 • 補償供與措置	• 발동절차에 관하여서는 GATT협정 제19조가 특정적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서 피해판정기준에 대한 運用細則이 마련되어야만 할 것임. • GATT협정 제19조에 규정된 被發動國과의 協議나 補償措置에 대한 규정이 韓國의 現行制度에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분쟁의 대상이 될 소지가 적지않음(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의 문제).

위의 〈表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동요건에 있어서 改正關稅法 第13條에서는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GATT협정 제19조가 규정하고 있는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조치를 발동하도록 하고 있는 要件과 관련시켜서 볼 때 그 개념의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세법 제13조상의 『중대한 피해』를 보다 엄격한 『심각한 피해』로 수정하거나, 또는 그 개념을 UR Safeguard協定에서 定義하고 있는 "국내산업의 상태에 대한 현저하고도 전반적인 被害(a significant overall impairment in the position of a domestic industry)"로 規定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입증가나 산업피해판정에 있어서 槪念上의 恣意性을 배제하게 될 것이다. 또한 關稅法 第13條에는 緊急關稅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긴급수입제한제도의 實效를 거두기 위하여서는 通關禁止나 通關保留 등의 非關稅措置를 併用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美國, EC, 캐나다, 호주 등의 先進國은 輸入排除命令 등과 같은 强力한 非關稅措置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발동절차에 관하여서는 GATT協定 第19條가 특별히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制度運用의 투명성, 公正性 및 客觀性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국내산업에의 피해판정기준에 관한 運用細則 및 調査節次에 관한 運用細則이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GATT協定 第19條에 의거하여 긴급관세부과시에 행하게 되어 있는 被發動國과의 事前 또는 事後的 協議(consultation)에 관한 규정 및 긴급관세부과의 代價로 供與해야 하는 補償措置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분쟁의 대상이 될 素地가 적지 않은 바, 向後 相對國과의 통상마찰의 素地를 배제하기 위하여서는 上記 規定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또한 긴급관세제도를 효율적인 세이프가드조치로 活用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緊急關稅는 産業被害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발동요청시에는 特定物品의 輸入增加로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斜陽産業, 유치산업 또는 첨단산업인지의 與否에 관계없이 산업간에 別途의 輕重을 두지 않고 制度를 운용하여야만 한다. 왜냐하면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는 斜陽産業에서 많이 發生하고 있으나

우리나라가 育成하고자 하는 一種의 첨단성장산업에서도 발생할 것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斜陽産業에 대하여서는 구조조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가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하거나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고, 첨단성장산업에 대하여서는 UR 補助金協定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지원 등의 정부지원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이전에 발생하는 산업피해로부터 당해산업을 신속히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 긴급관세제도의 운용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둘째, 緊急關稅의 발동기간은 산업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정도 길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被害原因이 제거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年例再審(annual review)을 통해 판정함으로써 적절한 상당기간 동안 부과하도록 한다.

그러나 檢討컨대, 우리나라의 농업은 국토의 협소성과 영농면적의 소규모성으로 인하여 대표적인 비교열위산업인 바, 이에 따라 國內外價格差가 크고, 또한 농산물은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가격비탄력적인 바, 산업피해구제조치로서의 긴급관세부과는 限界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농산물에 대한 산업피해구제는 一次的으로는 세이프가드로서의 수입수량제한이 보다 바람직하며, 긴급관세의 발동은 이와 併行하거나 또는 第二次的인 수단으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2. 反덤핑關稅制度의 改正方案

反덤핑關稅制度는 改正關稅法 제11조, 同法 施行令 제4조 2-8 및 17, 덤핑防止關稅 및 相計關稅運營規程(재무부고시 제89-6호)과 對外貿易法 제40조, 수입에 의한 産業被害調査의 運營·節次 등에 관한 규정 제31~32조 등에 法的 根據를 두고 있다.

反덤핑關稅制度의 活用實績을 보면 1993年 11月 현재까지 총 14件의 提訴가 이루어져 無被害判定으로 기각된 사건이 4件, 당사자간의 화해 등에 의한 제소철회가 2건, 約束受諾에 의한 해결이 2件, 被害肯定에 따른 反덤핑關稅(잠정반덤핑관세를 포함함)의 부과건수가 5件,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수가 1件에 이르고 있다.

아래에서는 本制度運用上의 問題点 및 改善方案은 省略하고 法規上의 問題点과 그 改正方案만을 考察하여 보기로 한다.

(1) 덤핑調査節次

韓國의 通商與件에 비추어 반덤핑관세의 부과와 관련한 通商摩擦을 줄이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덤핑調査節次를 마련하여 反덤핑關稅制度의 비합리적인 운영이라는 비난을 막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급적 GATT協定 및 GATT反덤핑協約에 일치하는 反덤핑調査節次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덤핑調査過程에 수반되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국내기업이 용이하게 反덤핑關稅制度를 활용할 수 있도록 反덤핑關稅賦課節次를 簡素化, 明瞭化시킬 필요가 있다.

가. 提訴者資格의 擴大

1993年 1月 關稅法施行令의 改正으로 反덤핑關稅賦課申請人의 자격을 당해수입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생산자 전체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자집단 內外에 덤핑수입물품의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생산자 및 덤핑물품을 수입하면서 또한 생산하는 국내생산자인 特殊關係者(related party)에게 확대한 것은 美國과 EC 등의 法規內容을 수용한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더 나아가서 당해산업을 관할하는 주무부장관에게까지 그 신청자격을 인정한 것은 本制度의 적극적 운용가능성을 엿보이게 하는 것이다.

나. 提訴者의 代表性에 관한 基準設定

提訴者資格과 관련한 또 하나의 문제로 提訴者가 國內産業을 대표하는가의 여부이다. 이는 少數企業의 제소도 인정할 것인가와 國內總生産의 어느 정도 이상을 生産하는 경우에 提訴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서 改正關稅法은 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GATT協定 및 反덤핑關稅協約도 明確한 判斷基準을 規定하고 있지는 않다. 여기에 자극받아 UR 反덤핑關稅協約에서는 제소자의 자격을 국내시장참입자 전체의 50%(국내제조업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여야만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美國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수치를 關稅法에 명시할 필요는 없을지 모르나 재

무부와 무역위원회의 內部的指針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각국의 관례에 비추어 볼 때 國內産業의 30~50%이상 生産者(및 生産者聯合)에 대해서만 提訴資格을 허용하도록 하며, 제소시 국내 동종물품 關聯生産者의 명시적인 意思表示에 따른 지지 또는 반대의 정도를 조사하여 제시하도록 하되, 國內生産者가 많거나 國內産業이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標本調査에 의한 意思表示確認도 가능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 調査期間

1993年 1月에 改正된 關稅法施行令에서는 事前調査에 4個月, 本調査에 3個月, 구제조치결정에 1個月 以內로 되어 있어 總8個月(240日)까지의 期間이 소요되게 되어 있는 바, 종전에 소요되는 總360日보다는 상당히 단축시켜 구제조치의 신속화를 圖謀努力하고 있다.

예비조사기간이 유사한 美國(115日), 호주(120日)의 경우에는 그 동안의 예비판정결과를 근거로 하여 잠정조치 등 피해구제조치를 대부분 실시하고 있고, 본조사에서는 예비판정에 관한 검증만을 위주로 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바, 예비조사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의 실질적인 증거수집을 토대로 하여 덤핑마진율 및 산업피해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조사활동을 公正하게 이행하되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라. 예비판정제도의 활성화

현행 관세법시행령 제4조의5의 규정에 의하면 덤핑조사기간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판정제도를 도입하여 조사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덤핑 및 산업피해예비판정을 반드시 하여 잠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전조사의 결과가 객관적이고 公正한 잠정조치 등의 발동으로 나타나기 위하여서는 사전조사과정에서 수출자 및 국내 특수관계자의 辯論權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교역상대국의 수출자 등을 설득하기 어렵게 되고, 그 결과 통상마찰을 야기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다.

美國, EC, 호주 등 선진국은 豫備調査段階에서 이해당사자로부터의 실질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公聽會開催 등을 통하여 辯論機會를 제공하고 있으며, 호주 및 EC는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조사까지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조

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本調査段階에서는 豫備判定結果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을 실시하거나(美國), 關聯機關과의 協議를 통하여 최종조치의 적용여부 등을 심사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EC 등).

이렇게 豫備調査段階에서의 구체적인 調査活動의 範圍에 대해서는 국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豫備調査過程에서 一般으로 수출자의 辯論權이 인정되고 있음은 制度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事前調査段階에서는 最小限 利害當事者의 答辯書調査 및 公聽會 등을 통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을 포함토록 하며, 本調査段階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한 關聯資料의 檢證 등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하여서는 事前調査段階에서의 구체적인 조사활동내용 및 절차를 관세법시행령, 同 施行規則과 또한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운영규정』에 상세히 規定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産業被害槪念의 細部的 具體化

가. 最小範圍의 덤핑(de minimus)槪念의 具體化

改正關稅法에서 施行令에 委任하여 규정하고 있는 "덤핑차액, 덤핑수입량 또는 실질적인 피해 등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요청을 기각하고 조사를 종결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불필요한 조사로 인한 행정적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경미한』 수준의 덤핑마진을 어느 수준의 덤핑率로 정할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다만, 美國의 경우에는 이를 상무부규정(19C.F.R.Part 353)으로 0.5%이하로 규정하여 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명확성을 제거하고 덤핑조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UR 반덤핑관세협약에서 제시되고 있는 『경미한』 덤핑수준에 대한 기준율을 도입하여 조사를 즉시 종결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즉, 덤핑율이 2%미만(正常價格에 대한 비율)인 경우, 또는 個別國家로부터의 덤핑수입량이 國內市場에서 1%미만의 市場占有率을 차지하고, 그러한 個別國家로부터의 총덤핑수입량이 2.5%이하의 市場占有率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덤핑조사를 종결하도록 관세법시행령에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國內産業確立의 實質的 遲延』槪念에 관한 具體的 定義의 마련

GATT協定 第6條 第6項(a)의 규정에 의하면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의 덤핑輸出로 말미암아 自國의 기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自國의 국내산업의 확립을 실질적으로 지연(such as to retard materially the establishment of a domestic industry)시킨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체약국영역의 産品輸入에 대하여 反덤핑關稅를 부과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각국의 反덤핑關稅法令에는 이에 관한 明確한 규정이 明記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反덤핑關稅措置가 發動된 事例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제적 기준이나 관행의 不在에도 불구하고 『국내산업확립의 실질적 지연』은 反덤핑調査의 발동요건으로서 GATT協定이 허용하고 있는 바이며, 특히 韓國의 경우에는 先進國과는 달리 고급기술제품이 그 개발초기단계에 있는 업종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투자로 새로운 국산품의 개발이 이제 막 이루어져 국내시장에 參入을 시작할 즈음에 日本, 美國, EC, 호주 등의 기업체가 旣開發하여 韓國內市場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低價攻勢를 펴서 국산품의 초기개발단계에서부터 이에 피해를 입히는 事例(例 : 폴리아세탈수지 등)가 증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내산업확립의 실질적 지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야만 할 것이다.

또한 『산업확립의 실질적 지연』에 관한 사례를 연구하고 그에 대한 판정기준을 관세법령 및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운영규정』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로 美國 國際貿易委員會(USITC)에 의한 判定事例(Certain Dried Salted Codfish from Canada) 등을 심층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被害判定基準上 公共의 利益에 관련된 要素와 그 적용기준의 明示

反덤핑關稅의 부과는 兩面性을 지니고 있어서 同 措置로 말미암아 國內産業의 보호에 따른 이익보다는 당해품목의 需要者나 消費者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되는 部分品의 品質, 性能, 價格, 生産可能數量 등이 輸入部分品에 비하여 열등한

경우에는 同 部分品에 대한 反덤핑關稅의 부과로 인하여 국내의 관련 주요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운영규정 第18條上 公共의 利益(Public Interest)을 고려할 수 있는 規定을 보다 상세하고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예컨대, 특정부분품의 수입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一應 同 部分品의 實需要産業을 모두 지정하고 당해산업내에서 同 部分品의 소요비용이 총비용에서 점유하는 비중 및 부분품가격의 상승이 당해산업의 생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反덤핑關稅措置가 公共利益的 見地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가지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한 方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美國의 경우를 보면, 1984年 通商關稅法(Trade and Tariff Act) 第604條는 商務部가 덤핑조사의 中止(suspension of investigation)를 결정할 때에는 그러한 결정에 앞서 고려하여야 할 "公益的 要素"(public interest factors)들을 규정하고, 또한 同 決定을 내리기에 앞서 조사와는 직접관련이 없는 소비자, 생산자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집단과 사전협의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무부가 고려해야 할 공익적 요소들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즉, ①소비자물가와 상품의 공급가능성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에 기초하여 同 約束이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의 부과보다 미국소비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의 여부, ②미국의 국가경제이익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 ③동종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업계의 경쟁력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고용, 투자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이다.

(3) 迂廻덤핑防止關稅의 制度化

어떤 물품에 확정 反덤핑關稅가 부과될 경우 輸出國의 企業들은 反덤핑關稅를 회피하기 위하여 ①反덤핑關稅 부과대상물품을 변형(用途, 品質 등)한 제품을 輸出하거나, ②部品을 輸出하여 제3국에서 조립하여 輸入國에 수출하거나, ③部品을 輸出하여 수입국 현지에서 조립하여 販賣하는 등의 다양한 輸出方案을 강구하게 마련인 것이다.

그런데 改正關稅法은 이러한 迂廻덤핑에 대해 아무런 규제조항을 갖고

있지 않으나, 反덤핑關稅조치를 迂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의 마련은 反덤핑關稅의 實效性確保次元뿐만 아니라 기업의 國際化過程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덤핑慣行에 대처한다는 점에서도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組立, 販賣하는 행위는 UR 反덤핑關稅協約 第12條에서 규정하고 있는 內容 즉, 一定要件이 충족된 경우에는 관계당국이 수입국내에서의 조립 또는 완성을 目的으로 하는 部分品까지도 반덤핑관세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우리나라의 關稅法令에 反映시켜야만 할 것이다. 다만, UR 反덤핑關稅協約도 우회덤핑방지관세제도를 전면적으로 포괄하고 있지는 못한 바 즉, 部分品을 수출하여 수입국현지에서 조립,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반덤핑관세조치의 적용기준과 절차등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다. 즉, 그 내용은 주로 部分品의 輸出이 迂廻輸出의 형태를 띠고 있는지의 여부와 輸入된 部品으로 조립된 제품의 原産地가 어디인가를 엄격히 판정하기 위한 것으로, 迂廻덤핑判定要件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①수입부품으로 組立(完成)된 제품이 기존 反덤핑關稅賦課對象인 물품과 同種物品인지의 여부

②수입국내 生産者가 反덤핑關稅賦課對象인 동종물품의 生産者나 輸出者와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部分品供給者와의 관련여부 포함)

③수입국내 生産者가 反덤핑關稅부과물품에 대한 조사개시후에 生産을 개시하였거나 實質的으로 생산을 증가시켰으며, 部分品의 輸入이 조사개시후에 현저히 증가하였는지의 여부

④反덤핑關稅부과대상인 輸出國에서 조달된 부분품의 총비용이 全體 部分品의 총비용의 70% 이상인지의 여부

따라서 이러한 同 協約(案)이 가지는 한계점 때문에 형태를 다소간 變形시킨 변형제품의 國內輸出에 대한 規制는 同種物品의 엄격한 해석을 통하여 규제하고, 제3국에서 組立, 輸出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原産地規程을 엄격하게 실시하여 규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만 한다. 改正關稅法이 從前과는 달리 反덤핑關稅의 부과절차를 大統領令에 위임하고 있는 바, 關稅法施行令에라도 체계를 갖춰 우회덤핑방지관세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야만 한다. 美國은 1988년 종합무역법에 제1317조(third-country dumping) 및 제1318조(input dumping by related party)를 신설하여 우회덤핑

방지관세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EC도 1988年 8月 反덤핑關稅規程을 개정하여 EC域外産部分品의 EC域內에서의 단순한 조립·판매만을 목적으로 하여 EC域內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所謂 screw driver 工場이라고 부름)을 우회덤핑방지관세제도를 통하여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이 활용하고 있는 이러한 우회덤핑방지관세제도는 其實 법률적, 기술적으로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사안인 바, 이를 우리나라의 關稅法令 및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운영규정』에 도입하는데 있어서는 ①기업활동의 국제화(globalization) 현상과 관련하여 原産地別 部分品價額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하는 점, ②절차상 질문서 발송이나 자료제출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 및 ③이미 제품의 국내조립·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우회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가능한 方案을 마련하여야만 한다는 점 등이 요구되고 있다 하겠다.

(4) 中小企業에 대한 反덤핑提訴支援規定의 마련

先進國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外國의 덤핑行爲로 인한 被害를 中小企業이 입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그러나 中小企業은 일반적으로 反덤핑關稅制度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同制度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활용시에도 專門人力의 부족이나 제소시 요청되는 資料提出에 따르는 과다한 부담, 調査過程에서 소요되는 막대한 경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中小企業에 대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中小企業에 의한 反덤핑關稅制度의 활용은 사실상 곤란할 것으로 보이므로 中小企業에 대한 提訴支援方案이 종합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5) 自動時效消滅條項 및 再審査

反덤핑關稅措置는 발동후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그 賦課必要性이 제거될 경우에는 종결시켜야 하는 바, 그 방법으로서 美國은 年例再審査(annual review)를 통하여 反덤핑關稅賦課命令의 종결여부를 결정짓는 반면에, 캐나다, 濠洲, EC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自動時效消滅(sunset clause)을 채택하여 일정기간의 경과시에는 자동으로 效力을 消滅시키도록 하고 있

다.

年例再審査는 그 성격상 行政的 負擔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自動時效消滅條項을 채택하여 왔는데, UR 反덤핑關稅協約의 內容에 맞추어 반덤핑관세조치의 自動效力存續期間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행 關稅法施行令은 상황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해관계인에 의한 再審査要請을 허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再審査申請이 가능한 상황의 變動이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再審査節次를 최초의 反덤핑關稅의 賦課와 동일한 절차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國內生産者에 의한 再審査制度의 활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國內生産者의 保護라는 차원에서 再審査制度가 적극 활용되기 위해서는 再審査事由가 될 수 있는 狀況의 變動을 例示規定할 필요가 있다. 再審査의 事由가 될 수 있는 상황의 변동이란 덤핑行爲의 增加, 덤핑行爲의 再開, 약속의 違反, 덤핑 및 피해의 不在, 新規輸出, 피해제거에 불충분한 조치 등 再審査의 결과 反덤핑關稅措置가 사실상 수정되거나 撤回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再審査도 原則的으로 엄격한 基準과 節次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再審査의 事由를 열거적(enumeration)인 것으로 하여 이해관계인들이 肯定判定 이후 再審査를 요청하는 등의 惡用事例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換率變動이나 일반적인 성격의 변화에 대해서는 再審査를 허용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迅速한 再審査를 위해서는 필요시 再審査의 事由가 되고있는 상황의 변동부분에 한정하여 調査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再審査期間을 정상적인 덤핑조사기간보다 다소 짧은 기간으로 規定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美國, EC, 캐나다 및 호주의 경우에는 연례재심사의 결과 피해긍정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이다.

(6) 貿易事件專門法院의 設置 檢討

우루과이라운드 반덤핑관세협약은 그 제14조의 규정에서 덤핑조사 당국의 반덤핑관세조치와 관련하여 GATT회원국이 신속한 재심을 받을 수 있

는 사법적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향후 대외적인 공신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덤핑으로 인하여 산업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국내의 제소자도 제소가 却下 또는 棄却되는 경우에 정당한 사법적심사(Judicial Review)를 받을 수 있도록 사법적 구제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즉, 산업피해구제제도와 관련하여 재무부나 관세청 또는 무역위원회의 결정 또는 조치의 실시 등에 관하여 당사자가 불복을 신청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국내산업피해구제제도의 대내외적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재무부나 무역위원회의 결정자체를 불복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사법적 구제의 법적 근거를 관세법 혹은 대외무역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뉴욕소재)과 전문법원의 설치나 EC 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처럼 재판소내에 무역사건담당 특별부의 설치를 진취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에 HS관세세번분류와 관련된 사건이 대법원에까지 가서 판결이 난 사례가 있으며, 관세징수 및 환급에 관련된 법률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향후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법률사건이 상당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무역사건전문법원의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는 무엇보다도 무역 및 통상사건 및 산업피해사건에 전문지식을 구비한 판사 및 법률가의 양성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3. 報復關稅制度의 改正方案

報復關稅란 交易相對國의 차별적이고도 부당한 무역조치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부과하는 關稅를 말한다. 交易相對國의 비우호적이고 차별적인, 또는 부당한 무역조치는 비단 經濟的 强國에 의하여서만 취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現實的으로 輸入額이 많고 協商力이 강한 國家에 의해서 發動되는 경우가 보다 많았다고 하겠다. 韓國의 경우 最大交易國인 美國과 EC의 무역정책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과거 英國은 韓國産 鐵鋼製品의 一部가 英國人所有의 특허권을 침해하였

다는 이유로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하여 1988年 2月부터 상당기간 2~6.5%의 보복관세를 부과한 바 있었다. 이렇게 볼 때 미국 통상법(1974년) 제301조 및 클린턴행정부가 부활시킬 것으로 전망되는 Super 301조(Blue and Green 301조 등)에 대응하고, 외국기업이 韓國人所有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외국정부에 의한 불공정한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에 대응하는 동시에 외국에 의한 한국산 수출물품에 대한 시장접근거부 등 불공정한 교역행위에 대항하기 위해서 관세법상의 보복관세(retaliatory duty) 규정을 전면개정하여 공격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만 한다.

改正關稅法 第12條 第1項은 從前의 關稅法 第11條를 修正하여,

"①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 또는 양자간 무역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2. 기타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限 관련국제기구 또는 당사국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하여야 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검토컨대, 改正關稅法上의 報復關稅의 發動要件 즉, 『우리나라의 權益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및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그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투명성(transparency)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細分化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참고로, 日本은 關稅定率法을 改正하여 報復關稅條項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發動要件으로서 ①外國人에 의한 日本人所有의 知的財産權侵害, ②外國政府에 의한 불공정한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 ③外國政府에 의한 一方的 貿易制裁措置, ④日本産 輸入品에 대한 차별적 조치 등을 열거하고 있는 바, 공격무기화의 가능성을 對外에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또한 이러한 움직임에 편승하여 中國도 海關法을 改正하여 보복

관세조항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말하자면, 財政手段으로서의 關稅가 아닌 通商手段으로서의 공격무기(retorsion)로 活用하겠다는 정책의지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도 報復關稅制度를 재정비하여 무역상의 이익확보라는 각도에서 필요시에는 협상카드로서 적극적으로 活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報復關稅가 통상마찰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므로 무역상 피해를 입은데에 대한 協商카드로서의 機能를 보다 중히 여기되 불가피시에 限하여 보복관세 자체를 발동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Ⅴ. 結 言

本論考에서는 通商摩擦에 對應하기 위한 方法의 일환으로 關稅法의 향후 改正方向에 대하여 檢討하여 보았는 바, 1990年부터 이미 GATT 第11條國으로 移行하였고 더구나 1996年頃에는 OECD에의 加入을 目標로 하고 있는 韓國으로서는 目下 요구되고 있는 관세법률의 GATT협정 등을 비롯한 국제통상규범에의 법률적 조화 및 그 시행상의 부합요구를 만족시켜 개방화 및 국제화를 지향하는 국제적 조류에서 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합규범적으로 개정된 關稅法을 집행하는 것은 공무원인 바, 이들 관세행정 공무원들이 지니는 국제화, 개방화, 자율화, 경쟁지향화에 대한 『선진의식화』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선진의식화』교육도 게을리하지 말고, 또한 더 나아가서 국민경제의 주체인 국민일반에 대한 국제경제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만 民官을 통틀어 국가전체가 통상마찰에 유연하게 對應할 수 있게 될 것이다.